

자동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을 중심으로

이선구[†]

법학박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Review of a Tort Case regarding Liability for the Production of Air Pollutant-emitting Vehicles: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7437, Decided on September 4, 2014

Lee, Sun Goo[†]

Gac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section of tort law and environmental health in a recent court decision.

Methods: This paper analyzes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7437, Decided on September 4, 2014 and related lower court decisions.

Results: The plaintiffs sought financial compensation from the defendants, arguing that air pollutants in gases emitted by vehicles produced by the defendants had caused them to acquire respiratory diseases. The district court highlighted the need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laintiffs, but proceeded to review whether the plaintiffs proved the actual toxicity levels of the air pollutants, whether the defendant's vehicles were the main source of the emissions, the plaintiff's level of exposure to the pollutants, and causation between the emissions and the injury. By doing so, the district court required the plaintiffs to prove both indirect and direct facts of causation, increasing burden of proof for plaintiffs. The appellate court upheld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adding that the defendant's conduct did not constitute an illegal act because it did not violate the emissions standards set by environmental law.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reasoning that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cannot establish a direct causation for diseases that lack specificity.

Conclusion: This case demonstrates that discussions in environmental health have significance in tort lawsuits. For each fact that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attempted to prove,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studies were offered as evidence. In addition, the courts decided the legality of the defendant's conduct based on emission standards set by environmental law.

Key words: Burden of proof, environmental health, environmental torts, Korean court decisions,

I. 서 론

이 글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고 한다)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그리고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들(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을 피고로 삼아 민

[†]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Medicine, Gachon University, Gyonggi-do, Korea, Tel: +82-31-750-6925, Fax: +82-30-6925, E-mail: sungoolee@gmail.com

Received: 01 December 2016, Revised: 10 December 2016, Accepted: 12 December 2016

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 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은 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원고의 손해, ④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이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성립하는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은 상고심인 위 대상판결뿐만 아니라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의 위법성 판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헌법상 환경권과 인격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의 배출금지를 구하는 부작위청구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과관계의 증명과는 관련성이 적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II. 소송의 경과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서울특별시에 있는 거주지나 근무지의 인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들의 이 사건 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공해소송에서는 원고들이 ①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호흡기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실, ② 대기오염물질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 이른바 개연성 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회사들은, 역학조사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어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곧바로 특정 개인인 원고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이 문제되는 민사소송법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연성 이론이 적용될 수 없고, 대기오염물질이 천식 등의 원인이라거나 자동차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발생원이라 보기 어렵고, 서울특별시 전역 또는 이 사건 도로의 대기오염의 정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들의 이 사건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제1심 법원은 판결문 제V항의 제1항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에서 다음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순서대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이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인과관계 일반

(1) 증명책임완화 이론의 적용 여부

“원고들로서는 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이 사건 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위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는 점, ③ 이 사건 각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배기가스로 인하여 서울시 전역 또는 도로변이 오염되었고 그 오염의 상황, 정도가 이 사건 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

인이 될 정도라는 점, ④ 원고들이 서울시, 특히 이 사건 각 도로변에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각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각 모순 없이 증명하면 일응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반증으로 ① 자동차배출가스 중에는 원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②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들의 피해는 자동차배출가스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역학적 인과관계 적용 여부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법도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역학적 의미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다른 요인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 개인별로 해당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점 및 해당 요인이 주요한 가해요인이거나 주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비중 있는 가해요인이었던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제1심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역학조사결과들과 상관관계를 부정한 연구결과들의 증거 가치를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 결과들 내에서도 물질별, 농도별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②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거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위 연구 결과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 자료들의 대표성의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인지 여부

제1심은 오염원별 기여도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CAPSS) 자료 등 서울의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라는 연구결과 및 자동차가 대기오염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배출원 중 하나임을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미세먼지 오염도와 자동차 증가 추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CAPSS 자료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연구결과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 결과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자동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이 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은 다음과 같이 가정적으로 원고들의 대기오염물질 노출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가사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는 점 및 자동차가 위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 등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역학 연구 결과들에 기초한 일반적인 인과관계일 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역시 증명되어야 한다. (중략) 위 역학조사결과 및 서울 시내의 대기오염현황 및 원고들의 거주력 및 근무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오염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거주력 및 근무력에 대한 정보, 특히 [이 사건] 도로와의 거리, 교통량, 주변 대기오염 측정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대

기오염물질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었다는 점 자체가 불확실하여 역학 연구결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에의 노출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마. 이 사건 도로에 배출된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들의 각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제1심은 위 나항, 다항, 라항이 모두 증명되었다는 가정 아래 원고들이 노출 직후 또는 그로부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이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지확장증의 경우 과거 병력의 후유증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 원고의 경우 천식 의증으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천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일부 원고는 천식 치료 병력은 있으나 대부분의 증상은 비염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 원고의 경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천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일부 원고의 경우 유아기부터 백일해 및 상기도 감염 병력이 많고, 일부 원고의 경우 천식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밤, 겨울 등 또는 동물에 접촉한 이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원고의 경우 추울 때에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천식의 발병 또는 증상 악화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 원고들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원고들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판결이 다루지 아니한 부분, 즉 피고 회사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들이 법령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

거가 없을 뿐 아니라, (중략) 서울시 지역으로 자동차가 집적·집중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자동차의 제조·판매행위로 서울시의 대기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하여 오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어떤 기술을 채용하여야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질환이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비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학적 증거에 의한 위험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법리를 밝히고, 이어서 원고들이 인과관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중략) 원심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면이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역학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이 사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III. 연 구

1. 환경오염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 202조). 민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므로 소송요건의 존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¹⁾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법률요건에 해당하므로²⁾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법률요건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인 원고가 오염물질의 발생부터 피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하나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3)}

나. 그런데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정도의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¹⁾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해명에 높은 수준의 자연과학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이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는 데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 이러한 배경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개연성설, 신개연성설, 역학적 인과관계설 등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었다.^{1,2)}

(1) 개연성설

개연성설에 따르면 공해로 인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개연성설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과일나무의 산출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인 대법원 1974. 12.10. 선고 92다1774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관하여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이론구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¹⁾ 대법원은 그 후 진해화학 사건 판결 등에서 개연성설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로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1,4,5,6)}

(2) 신개연성설

신개연성설은 개연성설의 약점을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극복하려는 것으로, 그 기본 태도는 인과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주체의 유형화 작업을 거쳐 추출한 다양한 증명주체 가운데 피해자가 증명할 범위를 축소 내지 경감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일응 추정하는 반면, 면책을 피하는 가해자에게는 보다 폭넓은 간접반증의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3,4,6)}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가) 호미청광, 죽하수부 교수의 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원고가 증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기업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특정물질의 발생, 이 특정물질의 외부로의 배출, 매체를 통한 확산, 원고의 신체 또는 재산에의 도달, 손해의 발생. 그 중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배출된 물질이 손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령 배출물질이 손해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손해를 발생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⁴⁾ 그러나 원고가 각각의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에는 이른바 일응의 추정에 의하여 다른 증명사항이나 경험칙만으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다.⁴⁾ 피고가 이러한 증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여 그러한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그 주요사실의 부존재를 추인하도록 하는 별도의 간접사실 등 간접반증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⁴⁾

(나) 담로강구 교수의 이론

① 피해 발생의 경로와 원인물질(병인론 내지 원인론), ② 원인물질의 피해자로의 도달 경로(오염경로), ③ 공장에서 원인물질이 생성되어 배출된 사실의 세 가지 모두를 직접증명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다.⁴⁾ 또한 적어도 그 중 두 가지를 증명하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고, 가해자에게 간접반증의 책임을 지게 한다.⁴⁾

(3) 역학적 인과관계설

역학적 인과관계론이란 환경침해의 원인규명에 역학적 접근방법을 도입하려는 이론이다.⁴⁾ 이에 따르면 원인물질의 유해성과 오염경로 등 인과과정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불명한 점이 남는 경우에도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이른바 '진해화학 사건 판결')은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법리를 도입한 선도적인 판결이다.³⁾ 이 판결은 김 양식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김 양식장에 유해한 납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된 폐

수 때문에 양식하던 김에 병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배출한 폐수를 혼합한 해수의 오염도가 안전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폐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던 김의 병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법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른바 오염물질인 폐수를 바다로 배출함으로써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실질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중략)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② 그 폐수 중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③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① 피고 공장 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또는 ②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물이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

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라. 대법원은 그 이후의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도 일관하여 위 법리를 따랐는데(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0다65666, 65673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등 참조), 이것은 개연성설 혹은 신개연성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³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산업 활동이 다양화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모든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³⁴⁾

2. 제1심 판결에 대한 검토

가. 증명책임의 확대

(1) 제1심 법원은 오염물질의 배출, 오염물질의 도달, 손해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오염물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진해화학 사건의 법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제1심은 이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이하 ‘㉠항’), ㉡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인지(이하 ‘㉡항’), ㉢ 원고들이 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는지(이하 ‘㉢항’), ㉣ 이 사건 도로에 배출된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이하 ‘㉣항’)의 순서로 판단하였다.

(2) 여기서 ㉠항은 대기오염물질의 유해성 여부, ㉡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틀어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라고 볼 수 있고, ㉢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도달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따라서 진해화학 사건의 법리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원고에게 ㉠항, ㉡항, ㉢항 및 이 사건 질환 발생의 증명 외에 ㉣항까지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제1심은 ㉠항, ㉡항, ㉢항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3) 대법원은 ㉣항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진해화학 판결과 같은 법리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제1심과 같이 ㉠항, ㉡항, ㉢항의 증명 외에 ㉣항의 증명까지 요구한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증명의 난이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항의 증명 여부를 살펴보다 증명의 정도가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완화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항, ㉡항, ㉢항 및 이 사건 질환의 발생이라는 간접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간접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후에 증명이 더욱 어려운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 여부를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사고 전개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고,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통상의 불법행위소송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것 같다.

나.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어야 하는지

(1) 제1심은 ㉡항을 판단한 때 자동차가 이 사건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진해화학 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유해물질의 배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유일한 또는 주요한 유해물질의 배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배출한 유해물질이 제3자가 배출한 유해물질과 경합하여 인과의 고리를 형성한 경우에는 제3자의 유해물질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미친 영향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므로[2,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단계인 인과관계의 존부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일이 아니다.

(2)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나 그 유해성이 미미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과연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느 시설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가 배출한 자동차배기가스의 오염 정도, 다른 오염원과의 비교하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등으로부터 가늠할 수 있는 유해의 정도를 위법성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역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와 원고의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피고가 배출한 오염원이 ‘주요’ 오염원인지를 살펴야 할 까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질병 발병의 시기에 관한 제한 문제

제1심이 ㉔항의 증명이 있어서 원고들이 자동차배출가스에 노출된 직후 또는 그로부터 제1심의 표현대로라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 것도 다소 의문스럽다.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원인이 있던 날부터 적당한 기간 내에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증명의 영역일 뿐이고, 시간적 간격의 길고 짧음은 인과관계를 단절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제1심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한 기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질환의 발병 시기에 시간적 제한을 둔 제1심의 법리 판단은 다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토

가. 위법성 여부의 명시적 판단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과 달리 피고 회사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 있다. 즉 항소심은 피고 회사들이 법령상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거주지나 근무지인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되어 대기가 오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자동차 제조·판매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령상 배출가스 규제기준은 배출가스의 유해성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대한 주요한 기준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들이 자동차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판매한 자동차(들)이 어느 장소에서 얼마만큼의 가스를 배출할지, 그 장소에 원고 몇 명이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을지를 예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자동차 제조·판매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밝힌 항소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위법성 판단과 인과관계 판단의 순서

불법행위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인과관계는 선행사실인 피고의 위법행위와 후행사실인 원고의 손해가 원인-결과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립요건 중 하나가 결여되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심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선행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제1심 법원이 항소심 법원처럼 피고 회사들의 위법행위 여부부터 판단하였다면, 그래서 피고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더라면, 인과관계의 심리 및 판단 과정까지 거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가. 대법원은 “피고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미세먼지 등의 농도 변화와 이 사건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미세먼지 등의 농도 변화와 이 사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과관계의 존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 법원은 진해화학 사건의 법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인과관계가 추정될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심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진해화학 사건 판결의 법리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일반불법행위사건의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역학적 증거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대법원은 이른바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17553 판결)에서 특이성 및 비특이성 질환의 개념을 도입한 이래 담배소송 사건(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23422 판결)과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증명법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특이성 질환 개념을 도입한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⁷⁾ 대법원은 ① 하나의 병인에 의하여(만) 발생하는 질병일 것, 그리고 ② 원인(특정 병인)과 결과(질병의 발병)가 명확하게 대응할 것을 특이성 질환의 개념 요소로 들고 있다. 그런데 질병이 오로지 하나의 병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질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의학과 보건학계의 통설인 다요인설(多要因說)이며, 이 점은 이 사건 질환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원인(병인)과 결과(질병의 발병)의 명확한 대응은 역학적 상관관계(epidemiological association)로부터 역학적 인과성을 추론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준들 가운데 하나인 특이성 기준과 일치하나, 역학계는 특이성을 인과성 추론의 유력한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⁸⁾ 따라서 역학적 상관관계 등을 통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서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을 달리 보지 않고 역학적 상관성의 강도를 포함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증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

IV. 결 론

대상 판결은 대기오염이라는 공해소송의 영역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통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환경보건학계의 역학연구 결과들을, 피고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역학연구 결과들을 각각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이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였다. 한편 대상 판결은 공해

물질을 배출한 행위자가 아니라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물건을 제조한 회사의 위법행위 여부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즉, 일정기준 이상의 공해물질을 배출한 물건을 제조한 회사의 위법행위 여부를 다루고 있다.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부가 설정한 공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사법부의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에서는 수많은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보건 연구는 공해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Lee, Si Yoon, *New Civil Procedure Act*, 8th ed., Pakyoungsa, 2014, pp. 524, 526, 535-537.
2. Jee, Won Lim, *Lectures on Civil Law*, 12th ed., Hongmoonsa, 2012, pp. 1720-1722.
3. Seo, Yeo Jeong, *Alleviation of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for medicine (blood product) - 2008Da16776 Decided on September 29, 2011, Trial and Case*. 2011;21:256-258.
4. Min, Jeong Suk, *Principles of causation proof in environmental lawsuits - 2009Da4608, 84516, 84639 Decided on January 12, 2012, Liberty and Liability and Companion*, 2012, pp. 333-335, 352-353, 359.
5. Cho, Min Seok, *The Burden of Proof in Pollution Lawsuit - By Focusing on the Burden of Proof, Land Law Review*. 2011;27(2):156-157.
6. Lim, Chi Yong, *Causation and burden of proof in environmental lawsuit, Trial and Reference* 2002; 94:81-89.
7. Lee, Sun Goo, *Using Epidemiological Evidence to Prove Causation in Toxic Torts: Rec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Justice*. 2015;146(1): 275-279.
8. Lee, Sun Goo, *Proving Causation With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obacco Lawsuit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16;49(2): 94-95.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0다65666-65673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1753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2342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